

"서울, 새로운 탄생"  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9337~8 전송 (02)3707 - 9349  
처리부서 : 소비자보호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9층) 담당 : 유 현 식

문서번호 소비 41250 - 1057

시행일자 1997.10. 8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국장	전 결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과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법무담당관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계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등기발송요망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기안	유 현 식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협조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 행정조치(3차) 180

1. 소비 41250- ('97. 7. 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제42조(다단계판매업자의 휴·폐업의 신고등)규정에 의거 휴·폐업 신고를 하지않고 무단 휴·폐업한 아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46조 제1항 18호(등록의 취소등) 및 동법 제61조 제13호 규정에 따라 3차 조치코자 합니다.

가. 해당업체

등록번호	상 호	주 소	대 표 자	조 치 사 항
제 37 호	신아로(주)	송파구 삼전동 101-2	김 석 기	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46조1항 18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6월 (기간 '97.10. 9. - '98. 4. 8)
제 52 호	뉴코리맨(주)	강남구 논현동 10-26	주 영 철	
제 54 호	경죽물산(주)	강남구 논현동 203-1	황 병 옥	

2.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제50조(청문) 규정에 의거 당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없이 처분코자 합니다. 끝.

(제2안)

수신 : 공보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제역피

1.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위반으로 영업정지된 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

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시보계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소 비 자 보 호 과 장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7 - 400 호

공고 일자	1997.10.21	제 316 호
공고 부속	공고 부속	공고 부속
공고 부속	공고 부속	공고 부속

다단계판매업자 영업정지공고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7 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해당업체

상 호	주 소	대 표 자
신아로(주)	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-2	김 석 기
뉴코려맨(주)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-26	주 영 철
경죽물산(주)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-1	황 병 옥

영업정지기간 : '97.10.9.'~'98. 4. 8.

영업정지사유 :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2조(다단계판매업자의 휴.폐업의 신고등) 규정위반